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실비수당등)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시행세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5.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</p> <p>6.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제11조(실비수당등)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
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 26.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12월23일
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1995년12월23일
 - 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('95.12.26.)상정, 심사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
 - 제안설명자 :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
 - 가. 개정이유
 마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'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, 구에서 직영하고자 우리 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
 - 나. 주요 골자
 ○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

운영에관한조례(1993.6.1.조례 제223호)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 - 동 폐지조례안은 '93.6.1.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'96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
 - '95년도 새마을이동문고 위탁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7,900만원으로서 지원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는 구자체 평가에 의해 동 사업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22,000여권의 도서는 구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배분하여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 - 그 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할 것은 물론 이동문고 위탁종사자 3명의 실직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4. 질의 및 답변요지
 - 질의요지(채재선 위원) : 이동도서관 종사자 3명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는가?

○답변요지(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) :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어 구 인사부서에 기능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, 우리 구 실정이 과적차량 단속원등 기능직을 오히려 감축해야 할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기능직 전환은 불가능 함.

○질의요지(채재선 위원) :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이용주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?

○답변요지(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) :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후 홍보계획을 수립,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임.

○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본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중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?

○답변요지(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) : 이동도서관 이용인원, 이용시기, 이용대상 등 그 동안의 이동도서관 제반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됨.

○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종사자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는가?

○답변요지(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) :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생계유지 차원의 배려를 연구 검토하겠음.

- 5. 토론 요지: 없음
- 6. 심사 결과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사항: 없음.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
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5년12월23일
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폐지이유

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뿐만 아니라,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효과적인 사

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, '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, 구에서 직영하고자 우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(1993.6.1.조례 제223호)를 폐지함

3. 폐지근거

지방자치법(1995.8.4. 법률 제4959호) 제15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
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
생활안정기금설치·운용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 17
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12월23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('95.12.26)상정, 심사, 보류
제35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('95.12.27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 :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

가. 개정이유

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 규정된 용자금액, 용자대상자 선정기준, 용자금 회수방법 등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자금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